

「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」 운영 안내

(자료제공: 세무회계과 세정계 ☎ 061-240-8304)

○ 도입배경 :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

※ 국세는 '14. 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(과세전적부심사는 '20년부터 적용)

○ 개요 :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

※ 신청대상 불복청구 : 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, 시도 심사청구

○ 지원대상 :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

구 분	내 용	
청구인 신청요건	종합소득금액	▪ 5천만원 이하 *배우자 포함
	소유재산가액	▪ 5억원 이하(부동산·회원권·승용차) * 배우자 포함 - 평가방법 : 지방세법(제4조) 상 시가표준액
	청구·신청세액	▪ 1천만원 이하
	신청불가 세목	▪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, 레저세는 신청불가
	법인 제외	▪ 법인은 신청불가, 개인만 가능
	고액·상습 체납자 제외	▪ 출국금지대상* 및 명단공개대상**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
신청 및 지정절차	청구·신청인	▪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
	자치단체	▪ 요건충족여부 검토 → 대리인 선정 →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